

보도시점 : 2026. 6. 14.(일) 11:00 이후(6. 15.(월) 조간) / 배포 : 2026. 6. 12.(금)

출생가구,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

【관련 국정과제】 63-1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및 저출생 극복

-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% 신설
-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

-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 -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고,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 등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민영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

- 민영주택 청약 시 출산 가구(만 2세 미만 신생아)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.
 - 그간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*하고 있어,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가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.

* 신혼부부 특별공급 23% 중 8%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9% 중 2%

-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(10%)하여 혼인 이후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가 청약 혜택을 얻도록 할 예정이다.

② 기업 유치 등 지역 맞춤형 공급 체계 개선

-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이주자 및 이전기업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현행 지방 특별공급 체계를 개선한다.
- 그간 지방정부의 장(長)은 지역의 시책추진을 위해 시·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(전체의 10%)을 할 수 있었으나, 운영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였다.
- 이에,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, 지방정부의 장(長)이 인정할 경우 특별공급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방 이주자를 위한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* (현행) 외국인 투자 촉진·전통문화 보존 등, 시·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운영
 → (개선) 지역에 기업 유치·인구 유입(추가 허용), 시·도지사 인정 시 즉시 이행

□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“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,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”라면서,

- “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	책임자	과 장 정수호	(044-201-3337)
		담당자	사무관 김정민	(044-201-3351)
			주무관 김은우	(044-201-3343)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 MOVE TO TOMORROW

참고

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내용

□ 제도 목적

- 신혼부부·생애최초 특별공급 체계의 복잡성·비효율을 개선하여, 출산 가구가 원활하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

* (기존) 생애최초+신혼부부 신생아 우선공급(5단계) → (개선) 신설신생아 특별공급(3단계)

□ 제도 개요

- (정책대상) 2세 미만 자녀(태아·입양 포함)가 있는 가구
- (제도구조)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 공급(우선공급 - 일반공급 - 추첨공급)
- (배분기준) 「생애최초 소득기준」 + 「우선 50% : 일반 20% : 추첨 30%」

생애최초 특별공급		신혼부부 특별공급		신생아 특별공급(신규)	
신생아 우선공급	15% 130% 이하	신생아 우선공급	25% 외 100% 이하 맞 120% 이하	신생아 우선공급	50% 130% 이하
신생아 일반공급	5% 160% 이하	신생아 일반공급	10% 외 140% 이하 맞 160% 이하	신생아 일반공급	20% 160% 이하
소득 우선공급	35% 130% 이하	소득 우선공급	25% 외 100% 이하 맞 120% 이하	신생아 추첨공급	30% 160% 초과 + 3.31억 이하
소득 일반공급	15% 160% 이하	소득 일반공급	10% 외 140% 이하 맞 160% 이하		
추첨공급	30% 160% 초과 + 3.31억 이하	추첨공급	30% 외 140% 초과 맞 160% 초과 + 3.31억 이하		

제도 간소화·수요 맞춤형

외별이 맞별이 가구 소득형태 미만영

- (신청자격) ①신생아, ②무주택세대구성원, ③소득(또는 자산) 기준

구분	민영주택「신생아 특별공급」	
청약통장	• 규제지역 2년, 수도권 1년, 비수도권 6개월 이상 가입	• 지역·규모 예치 기준 금액 이상
신청자격	• 2세 미만(2세가 되는 날 포함) 자녀 (태아 및 입양 자녀 포함)	• 무주택세대구성원 임주자모집 공고일 •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충족 (소득 130~160%, 부동산 3.31억원 이하)

- (당첨자 선정) 경쟁 발생 시 추첨을 통해 제도의 복잡성 최소화



주1. 원 안의 번호(①,③,⑤)는 '경쟁 발생 시' 신청자 이동 경로

주2. 괄호번호(1),(2)는 '낙첨자 이동 경로'로 우선공급 낙첨자는 다음 공급 단계로 이동(일반→추첨)